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74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 경,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김희걸,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채유미, 최정순,  
한기영 의원(13명)

## 1. 제안이유

-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조례의 형평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동 조례 부칙에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함(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t;신 설&gt;</u>			제2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